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4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박 정·오세희·이기헌

김용태ㆍ허 영ㆍ박상혁

정성호 · 김영환 · 정동영

김성원 · 허성무 · 이병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0조(기업 등에 대한 지원)에 의하면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·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"고 되어 있으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・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.

이에 접경지역(낙후지역)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(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4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5호"를 각각 "제5호·제8호"로 한다.

8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(수도권과 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)에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공장을 신축·증축(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·증축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56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제156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감면) ① 다음 각 소득세의 감면) ①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 사업"이라 한다)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. 1. ~ 7. (생 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8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(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한다)에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)하거나 공장을 신축ㆍ 증축(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 <u>장에서 하는</u>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

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호 · 제4호 · 제6호 · 제 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하고, 그 다음 2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 항제1호 · 제3호 · 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세액을, 제1항제2호 ·제4호·제6호·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 한다.

③ ~ ⑩ (생 략)

<u>제5호</u>
<u>• 제8호</u>
<u>제5호 · 제8호</u>
③ ~ ⑩ (현행과 같음)